

보도자료

2011년 11월 21일(월)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 (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준동 사무관 (750-2514) jdkim@kcc.go.kr
조사기획총괄과 조민영 사무관 (750-2613) my517@kcc.go.kr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변작번호 차단 의무
-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체계화·명확화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사업자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18일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천 억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걸려 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으나,

※ 전자금융사기('06.1월~'11.7월, 경찰청): 접수 29,987건, 피해 3,016억원

※ 전자금융사기는 주로 해외에서 우체국, 경찰청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를 걸어옴

이번 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국제전화 발신안내: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 발신창 표시 또는 음성안내
- ※ 변작번호 차단: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경우 차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미비한 바,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해소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하여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결과,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선사업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이후로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제도와 주파수할당 제도의 신청시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허가절차를 체계화·명확화하여 기간통신사업 진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마련(8.18일 위원회 보고)하여 입법예고(8.24일~9.14일),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11.3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 개선

①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선

-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와 주파수 할당제도의 신청시기 불일치 문제 해소, 예측가능성 결여 등 무선사업 진입절차의 흠결 보완 필요
 - ※ 신규사업자가 무선사업을 하려면 사업법상 허가과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함
 - 현 규정은 주파수할당 가능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주파수할당이 가능하더라도 공고기간중 동일 주파수대역 추가 희망자의 신청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로 체계화함
 - ※ 허가기본계획은 시장경쟁상황 평가결과, 주파수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

②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제도 개선

- 현행 ‘공공의 이익’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사실상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퇴출수단 마련 필요
-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폐지할 수 있도록 함

③ 경미한 양수·합병 인가심사 간소화

-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양수·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자원 이용 효율화

① 변작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 의무부과

- 자금용사기, 스팸문자 등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 필요

※ 전자금융사기('06~'11.7월, 경찰청): 접수 29,987건, 피해 3,016억원

- 사업자에게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

※ 규개위 개선권고: 조치의무 위반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②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자 자율에 맡겨진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

※ '03~'10년, 164개 공동구축 대상지구 중 37개 지구(22.5%)에서 공동구축 실시

③ 설비제공 현장조사 권한 명확화

- 설비제공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행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에 규정된 방통위의 설비제공·이용실태 현장조사 권한을 법정화

③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 개선

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 도입

-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해소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 촉진 필요

※ '11년 상반기 통신민원 : 16,043건

-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공표하는 제도 도입

②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시 과태료 상향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③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규제 완화

- 사업자 불편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부속협정의 인가는 신고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

※ 현재, KT(시내전화)·SKT(이동전화)와 기타 사업자간 상호접속 등 협정은 인가대상임

④ 기타 현행법의 미비사항 정비 등

①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 확대

-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 등)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

②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법 제52조)에는 이행기간 1회 연장 근거가 있음

③ 별정통신사업 등록 거부사유 구체화

- 등록거부 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구비서류 흠결,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외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